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오현숙 의원 대표발의】



2021. 4. 19.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27호로 2021년 4월 8일 오현숙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청년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코로나19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청년의 정의를 「청년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조제1호)
- 나.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신설(안 제13조제3항~제4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 나. 합 의: 사회적경제과
- 다. 입법예고 결과(2021. 4. 8. ~ 4. 13.):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등을 위한 활동비를 지급하여 청년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제1호에서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2020.8.5.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적용받는 청년의 기준을 「청년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음.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에서 3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에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변경되었음.

- 안 제13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에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4항에 청년 활동 지원방안을 신설하여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수립·시행,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서울시의 청년활동비 등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제4항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 바, 청년 활동비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위축되어 심각한 취업난에 직면한 청년에게 일정부분 지원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취업난에 직면한 청년에게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여 코로나19 극복의지를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집행부에서는 지원 대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후속 절차 추진을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